##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65 발의연월일: 2025. 2. 14.

발 의 자:이소영·복기왕·권향엽

김문수 • 윤건영 • 정혜경

허종식 · 김한규 · 전용기

윤종오 · 신장식 · 천하람

한정애 • 이용선 • 박지혜

허성무 • 조인철 • 박해철

김영화 • 박지원 • 김성회

박선원 • 서삼석 • 김재섭

안태준 • 박용갑 • 이광희

장종태・김 유 의원

(29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회기 중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 등을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 및 전산망등을 통해 공표하라고 되어 있을 뿐,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없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목록 등을 작성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공표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

률안을 사전에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고 있지 않고 있음.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본회의는 총 20회인데, 안건의 목록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통지된 시점은 평균 본회의 개의 2시간 전임. 심지어 본회의 개의 21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거나(2024년 7월 3일 본회의), 상정된 법률안의 개수가 29개인데 본회의 27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당 1분 미만의 검토시간이 주어진 경우(2025년 1월 8일 본회의), 총 83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본회의 개의 2시간 47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당 2분 남짓의 검토시간이 주어진 경우(2024년 9월 26일 본회의) 등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게 될 개별 의원들이 본회의 입장 전에 법안의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빈번하였음.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의사일정을 공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최소한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국회법」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76조의3 신설, 제93조의2 개정).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본회의 안건의 사전공표) 의장은 제76조에 의한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통하여 공표한다. 다만,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의2 단서 중 "특별한"을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76조의3(본회의 안건의 사전공
	표) 의장은 제76조에 의한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 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다만, 안보ㆍ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 -7 시0/비교시시 H 된 시 기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	시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	
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	
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	
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u>특별</u>	<u>안보</u>
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	•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
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